

1. 개정이유

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,
「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」상 일부 규제에 대한 신규 일몰을 설정
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“제16조 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”에 대한 신규일몰을 설정(안 제
17조에, 제16조 및 별표3의 결혼중개업자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,
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무조정실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11. 19. ~ 12. 3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여성가족부령 제 호

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

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결혼중개업원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규제의 재검토)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제16조 및 별표3에 따른 결혼중개업자 교육내용 및 방법 : 2022년 1월 1일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1.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

현행	개정안
제17조(규제의 재검토) (신설)	제17조(규제의 재검토) <u>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 1. 제16조 및 별표3에 따른 결혼중개업자 교육내용 및 방법 : 2022년 1월 1일